

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47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10월 3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청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직장운동 경기부 지도자 및 장애인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
나. 「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」 운영의 전반적 필요사항을 장애인 체육 전문단체인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고자 ‘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’ 및 ‘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
- 종 목 : 휠체어농구, 장애인탁구, 휠체어컬링
- 인 원 : 총23명(휠체어농구 12, 탁구 5, 휠체어컬링 6)

나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7.1.1.~2019.12.31.)
-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 -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
 - 경기인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
 -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·장비의 관리
 - 시정홍보 및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사항
- 소요예산(안) : 1,050,000천원(2017년 기준)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

-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제12조
-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('16.8.31)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2010.3.~2012.12.(2년 10개월), 서울시장애인체육회
- 2차 : 2013.1.~2014.12. (2년, 재계약), 서울시장애인체육회
 - ※ 장애인탁구팀 : 2012.7.~2014.12.(신설, 2년 6개월)
- 3차 : 2015.1.~2016.12. (2년, 재계약), 서울시장애인체육회

○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절차 이행여부

- '16. 9. :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(적정, 조직담당관)
- '16. 9. : 적격자심의위원회(적정, 체육정책과)
- '16. 10. :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(적정, 조직담당관)

라. 주요 위탁내용

○ 사업목적

-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장애인선수들이 경쟁력을 높여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 필요사항을 지원

○ 위탁사무 내용

-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
- 경기인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
-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·장비의 관리
- 시정홍보 및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국민체육진흥법

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

○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3조(경기부 설치 등)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둔다

○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9조(운영의 위탁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재계약)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,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,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7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체육정책과 체육복지팀 백민영(☎2133-2698)